

생산물배상책임공제 상품설명



대한상공회의소

KOREA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목 차

1. **제조물책임관련 위험 및 보험상품 소개**
2. **생산물배상책임공제**
3. **PL 사고의 특징**

1. 제조물책임관련 위험 및 보험상품 소개

○ 기업의 Claim 유형에 따른 생산물 보험

1) 생산물배상책임보험 (Product Liability Ins)

- 생산물의 결함으로 인한 제3자의 신체상해 및 재물손해로 인한 손해배상금 및 소송비용

2) 생산물보증배상(Product Gruarantee Legal Liability Ins)

- 결함있는 생산물 자체의 수리, 대체비용 담보
- 제 3자에 대한 손해 및 회수비용 면책

3) 보증책임 (Product Recall Ins)

- 결함 있는 생산물의 회수에 관련된 비용 담보
- 제3자에 대한 손해 면책

2. 생산물배상책임공제

상품 개요

- 피보험자가 제조, 유통, 판매 혹은 제공한 생산물(제조물)이 소비자에게 판매된 후 생산물의 **품질** 또는 기타의 **결함**으로 소비자를 포함한 제3자에게 신체상해 또는 재산손해를 입힘으로써 피보험자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피보험자의 손해를 보험조건에 따라 보상하는 보험
- 즉, 제조물책임으로 인한 기업의 손해를 보상

보험가입대상

- 가입업체 : 완성품/부품제조업자, 공급/판매업자, 수출/수입업자
- 가입대상 제조물 : 모든 형태의 공업생산물, 농수축산 가공식품
(원재료, 부품, 완성품)

2. 생산물배상책임공제 - PL관련 손해

제조물책임으로 인한 기업의 손해

손해배상금

- ▶ 피해자의 신체상해 및 재물손해와 관련한 합의금 / 판결금

〈신체상해〉

- 상해에 따른 치료비, 장해 또는 사망시의 소득상실
- 정신적 위자료 및 기타 비용손해

〈재물손해〉

- 재물의 파손에 따른 수리비 및 사용손실
- 재물의 멸실에 대한 교환가치

사고처리 비용

- ▶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에 대응하기 위한 각종 비용손해
- ▶ 변호사비용, 검사 및 비용, 외부전문가 비용, 소송비용 등

2. 생산물배상책임공제 - 보상하는 내용

○ 주요 보상하는 손해

(1) 제조물책임 사고와 관련하여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금 : 합의금 또는 법원판결금

(2) 피보험자가 지출한 제반 사고처리비용

가.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한 일체의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 지급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응급조치 및 긴급호송 등 긴급조치 비용)

나.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의 보전 또는 행사를 위한 필요한 절차를 취하는 데 지급한 필요하고 유익한 비용

다. 피보험자가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라. 보험증권상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마. 피보험자가 보험사의 협조요청에 따르기 위해 지급한 비용

2. 생산물배상책임공제 - 면책사항

○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주요 면책사유)

- 가. 피보험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법령위반 (Intentional Act)
- 나.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해 가중부담하는 배상책임 (Contractual Liability)
- 다. 피보험자의 종업원이 업무중에 입은 신체장해 (Worker's Compensation)
- 라. 제품 또는 그 일부에 생긴 제품자체의 손해 (Property Damage to the Insured's Product)
- 마. 환경오염 배상책임 (Environmental Liability)
- 바. 리콜비용 (Recall)
- 사. 벌금, 위약금 또는 징벌적 손해배상금 (Punitive Damage)
- 아. 전쟁, 천재지변 등 (War) / 원자력핵물질, 방사능 위험 (Nuclear Liability)
- 자. 피보험자가 보호, 관리, 통제하의 타인의 재물손해 (Care, Custody, or Control)
- 차. 물리적으로 파손되지 아니한 유체물의 사용손실
- 카. 손상재물 (Impaired Property) / 효능, 성능, 기능의 불발휘

2. 생산물배상책임공제 – 약관의 종류

약관의 종류

(1) 국내 생산물

- 생산물배상책임보험(Ⅰ) (손해사고기준)
- 생산물배상책임보험(Ⅱ) (배상청구기준)

(2) 해외 수출품 : USA 및 세계전지역

- Products/Completed Operations Liability Insurance Policy (Ⅰ) - Occurrence-made Basis
- Products/Completed Operations Liability Insurance Policy (Ⅱ) - Claim-made Basis

2. 생산물배상책임공제 – 배상청구 V. 손해사고

○ 배상청구기준 증권 V. 손해사고기준 증권

손해사고기준 증권 (Occurrence Basis Policy)

- **사고발생시점의 보험사가** 사고이후 언제라도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올 경우에도 보험사가 **책임**진다는 장점이 있으나, 사고이후 장기간 소요된 시점에서 배상청구가 제기되는 경우 사고발생시점의 보상한도액을 적용하므로 현실적인 담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맹점이 있음
- 사고일자의 불분명 (위험설, 과정설, 침해설)

배상청구기준 증권 (Claim-made Basis Policy)

- 보험기간중에 손해배상청구(Claim)이 제기된 경우 보상
- Long Tail(사고/클레임/해결이 장기화)을 고려할 때 손해배상청구시점의 보상한도액 등을 적용하므로 현실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사고발생시점이 불분명한 경우에도 **손해배상청구시점의 보험사 책임부담**

2. 생산물배상책임공제 – RD / ERP

소급담보일자(Retroactive Date)

- 배상청구기준 증권
- 손해사고발생일자를 보험기간 이전 특정날짜 이후로 제한

보고연장담보기간(Extended Reporting Period)

- 제한된 조건하에서 보험기간 종료 후 손해배상청구제기 사건에 대해 보험종기에 청구된 것으로 보아 담보(자동보고연장기간 60일 / 선택보고연장기간)
- 제한된 조건
 - 1) 보험료부지급 이외의 사유로 해지 되었거나 갱신되지 않는 경우
 - 2) 갱신된 배상청구기준 증권의 RD가 이전 증권의 RD보다 후일인 경우
 - 3) 갱신된 증권이 손해사고기준 증권일 경우

2. 생산물배상책임공제 – 배상청구기준(보상하는 사고)

배상청구기준 증권에서 보상하는 사고

첫째, 소급적용일자이후부터 보험기간 종료일까지 발생한 것

둘째,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가 보험기간 중에 제기된 것

- ☞ 소급담보일자 이전에 발생한 사고 및 보험기간 종료 이후에 발생한 사고는 보험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또한 보험기간 종료이후에 제기되는 손해배상청구도 담보대상(ERP)

※ PL사고의 특성상 제조물이 완성(제조)되어 유통단계를 거쳐 최종 소비자에게 이르는 기간이 장기간이 소요되며, 실제 사고일자로부터 수개월 또는 수년 후에 손해가 발생하거나,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PL보험의 경우 “손해배상청구기준 증권” 적용이 타당함

2. 생산물배상책임공제 – 보상한도액 / 공제금액

보상한도액 (Limit of Liability)

- 배상청보험사고로 인한 피보험자의 손해에 대하여 보험사에서 보상하기로 약정한 최대 보험금액

공제금액 (Deductible)

- 공제금액은 하나의 사고당(손해사고기준증권) 또는 하나의 청구당(배상청구기준증권)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금액
- 단, 손해배상금 이외 방어비용 등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함
 - ☞ 높은 공제금액 설정 보험료 인하효과

3. PL보험 사고 및 보상사례 – PL 사고의 특징

PL 사고의 특징

- 전문성 : 사고조사 및 해결에 대하여 고도의 전문성
- Long-Tail : 해결에 장시간이 소요
- 고비용 : 손해배상금외에 사고처리비용 및 인력소요
- 연속적인 손해배상청구

미주 PL Claim 특징

- 다수의 변호사 / 성공보수 제도 (고액의 보수, 소액 합의 종결)
- Punitive Damage
 - 실제 손해배상금의 수배 또는 수십배의 징벌적 손해배상금 부과
- 배심원 제도 (Jury System)
 - 제조물책임의 인정되는 비율이 매우 높음
- 디스커버리제도 (증거개시절차)
- 엄격책임제도 (Strict Liability)